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박호형 사무관 강균상	042-481-5168 042-481-8180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월 2일(금)부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3.2~4.11)한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 개정 발명진흥법 '17.11.28. 공포, '18.5.29. 시행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공제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11.28.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공제사업의 운영 자금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됐고, 사업의 관리·감독 및 세부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가 규정돼 있다.
-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특허공제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우수 특허기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과 지정신청서 서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5월 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강군상 사무관(☎ 042-481-81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04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 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nornja@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